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 사 보 고 서

2003. 12. 20.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년 12월 4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03년 12월 4일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2003년도(제2차 정례회) 제3차 행정위원회(2003.12.8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정진)

- 가. 개정이유
 - 매년 국가기준에 의거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일·숙직비를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실비소요액을 산정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당직비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- 나. 주요골자
 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개정.
제7조(당직 및 비상근무)④항에 당직비 지급근거 삽입.
- 다. 관련근거
 -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보완지침 : 행정자치부 재정과-994)
서울시 청사 12141-8584(2003.10.30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박창수)

현행 조례 제7조④항에 당직비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서울시장방침 725호의 일·숙직비 개선계획에 의거 서울시에서는 기존의 1만원에서 3만 5천원으로 인상 지급토록 하며, 송파구(4만원)를 제외한 타구의 경우도 모두 3만 5천원으로 인상 지급토록 추진중인 바 우리 구도 당·숙직 직원의 처우개선과 실비보상의 차원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83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12. 4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매년 국가기준에 의거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일·숙직비를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실비 소요액을 산정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당직비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개정
제7조(당직 및 비상근무)④항에 당직비 지급근거를 삽입

3. 참고사항

- 관련근거
 - 2004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보완지침 : 행정자치부 재정과-994호(2003. 8. 4)
 - 일·숙직비 개선계획 : 서울시 청사 12141-8584(2003.10.30)
- 합의사항 : 합의되었음
- 입법예고(2003.11.10~11.29)결과 : 의견제출 없음

따로붙임 : 1.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(안)
2.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(당직 및 비상근무) ④항중 “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”를 “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비와 기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당직 및 비상근무) ①생략	제7조(당직 및 비상근무) ①현행과 같음
②생략	②현행과 같음
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,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 <개정 96.2.15>	③현행과 같음
④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<개정 96.2.15>	④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비와 기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